

大學의 自治와 大學間 協同

具 丙 林

(本協議會 專門委員)

I. 머리말

大學의 自治(autonomy of university)란 각 大學內部에 있어서의 組織運營이나 教育 및 研究活動을 外部의 規制나 干涉을 받지 않고, 主體的・自律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體制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大學의 한 屬性으로서 普遍化되어 왔다.

大學間 協同(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역시 각 大學의 自治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또 각 大學이 희망하는 範圍內에서 일부 또는 전체 大學間에 이루어지는 互惠的 協力體制와 그 運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一時的 協力이나 特定事業에 국한되지 않는 持續的, 綜合的인 制度의 次元의 協同을 의미한다.

세심스럽게 大學의 自治나 相互協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現代의 開放社會 속에서 大學이 날로 광범해지고 다양화되는 그 機能과 役割을 충실히 수행하고, 大學에의 새로운挑戰이나 當面問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 大學의 創意的努力과 大學間의相互協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中世末에 발생한 近代的 意味의 大學은 당초 教授와 學生들이 學術的 組合(Universitas)을 형성하여 教皇이나 君主로부터 特許狀을 받아創

立된 것이기에, 그 特許로 高度의 學問自由나 教育・運營의 自治가 允許된 것이며, 이는 오늘 날까지도 모든 나라의 大學認可制度나 學問과 藝術의 自由, 그리고 大學만이 享有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特權의 源源이 되어 왔다.

본래, 教育이란 外部的 規制나 지나친 統制로 그 成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大學은 學問과 教育의 最高殿堂이며 知性과 慎智의 象徵으로 새로운 學問과 藝術을 創出하는 溫床이며 指導的 人材를 배출하는 產室이다. 이렇게 박중한 使命과 役割을 지닌 大學이 그 運營과 秩序에 있어서 外部의 規制나 干涉을 너무 받거나 또 그에 의존하여서는 어찌 새로운 學問의 開發과 보다 창의적이고 生産적인 教育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大學의 自治는 大學教育의 오랜 傳統이며 그 屬性이고 또 生理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念의 實現程度와 存在樣相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고, 大學의 自治는 名目上的 理念이 아니라 學問自由나 教育의 中立性 및 自律性 등 實益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狀況과 條件에 따라 그 程度와 樣態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後進社會나 新生國으로 國家社會의 成熟을 이루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自律能力의 측면에서나 國家發展의 促進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統

合的體制強化政策으로 大學自律에 대한 實際的制約이 많았고, 요즘은 先進國에서까지도 大學自治의 限界性問題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기실, 自由나 自律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資格과 權利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自由나 自律이 既是放縱과 無律의 遷機能으로 작용하여 끝내는 새로운 規制와 他律을 自招할 수밖에 없다는 論理는 自明하다.

人間의 成長發達에 있어서도 幼兒期의 無律과 少年期의 他律을 거쳐 성숙한 青年期에야 自律을 享有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自律이 他律보다 더 나은 價值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이나 성과가 이를 保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先進國에서도 大學이 지난날처럼 象牙塔으로서의 權威와 荣光에만 安住할 수 없고 社會 속의 대학으로서의 機能變容을 하게 되고 國家發展과 結連되는 高級人力의 義成機關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外部의支配나 干涉 또는 保護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現代大學의 特徵이다. 이는 私立大學을 포함하는 모든 대학의 公共性이나 社會公器로서의 役割期待가 커지고 있다는 證左이기도 하다.

따라서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現代的 意味의 大學自治는 無制限의 孤獨한 自由이기보다 오히려 主體性·自律性에 입각한 外部와의 相互協力이나 大學間協同까지도 포함하는 積極的概念이므로, 스스로 마련한 自律的 相互規制 등에 어느 정도의 制約을 받으면서도 전체 대학과 共生共存하는 새로운 차원의 大學自治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大學들은 아직 그 歷史가 짧고 그 동안의 社會文化的 與件이 어려워 大學의 自治나 大學間協同面에서는 크게 落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은 政府의 規制를 保護帶로 하여 이 정도나마 발전하였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이제는 政府의 關心과 각 大學의 努力에 의한 水準向上으로 지난날의 非理나 矛盾도 사라지고 상당한 水準의 自律能力도 갖게 되었다고 본다. 또 社會文化的 與件과 風土도 모든 영역에서 自由競爭을 통한 創意的 發展과 成就를 이룩하

고자 하는 慾望과 期待가 널리 識別하고 있다.

위와 같은 視角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大學들이 個個的으로 보다 광범한 自治를 享有하는 가운데 創意的, 生產的인 教育體制를 확보하는 한편으로 大學運營上의 共通課題를 대학간에 허심탄회하게 協議, 決定하고 相互協力하는 大學間協同을 體質化할 때,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先進水準으로 進一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II. 大學自治의 前提와 期待效果

다음으로 위와 같이 그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는 大學自治는 왜 필요하며 그 利得은 무엇이고 弊端은 없는 것인가를 理念的 面보다도 大學運營의 實際面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大學自治의 前提가 되는 것은 각 大學이 그 個個性이나 獨自性에 의한 서로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現代의 大眾社會에서 위와 같은 大學教育의 多樣性, 異質性은 갈수록 深化하고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와 같이 각기 다른 狀況에 있는 모든 大學들을 外部의 單一한 基準이나 尺度로 統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前提가 되는 것은 大學社會에는 理論的 水準에 있어서나 問題解決能力에 있어서도 出衆한 最高水準의 人的 資源과 物的 設備 그리고 意思決定의 合理化와 그 執行을 위한 배경이나 案例도 갖추고 있다. 그 위에 풍족한 情報와 資料가 있으며 해당 대학의 教育問題에 대하여 누구보다 관심이 크다. 더욱이 대학에는 國政이나 社會的, 經濟的 問題까지도 諸問할 수 있고 學問과 藝術을 先導하며 科學技術을 開發해 가는 知的 集團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集團의 습기로 대학운영에 있어서의 當爲와 實在를 連繫하고, 目標와 實績을 還流(feedback)시키며 필요한 教育條件를 확보하면서 自己成長을 도모해 간다면 그보다 훌륭한 自律集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前提가 될 수 있는 問題는前述한 바 있는 大學의 自律能力의 水準이나 그 意志 및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수준이 미흡하

고 創意的 開發보다 他律的 指示命令에 안주하고 安逸에만 침착하며 受動的 姿勢로 習性化될 때, 大學의 自治는 그 의미를喪失하고 한낱 口號에 그칠 뿐이다. 大學自治의 마지막前提는 이러한 自律을 受容할 수 있는 政策當局이나 監督廳의 意志와 大學教育觀이 要諦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大學教育에 필요한 國家的 次元의 規準의 提示, 支援을 위해 필요한 規制, 그리고 法과 秩序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制約 외에는 지나친 干與나 규제함이 없이 自律에 일임하여 스스로 責任질 수 있도록 保障해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前提들이 成熟했을 때 大學의 自治는 가능하며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 自律의 成果는 極大化될 수 있다. 大學自治가 이루할 수 있는 期待效果는 큰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① 各 大學의 自主性, 特殊性 및 個別性 確保
- ② 教育運營에 있어서의 自發性 및 參與意識 振作
- ③ 大學關係者들의 意慾과 信念 및 責任感 高潮
- ④ 大學의 規模와 水準에 맞는 管理體制 定着
- ⑤ 集團知에 의한 適正한 教育目標의 定立과 그 具現
- ⑥ 教育의 需要와 變化에 따른 伸縮性 있는 對處
- ⑦ 大學教育의 多樣性, 專門性의 充足
- ⑧ 大學運營의 安定性, 持續性 確保
- ⑨ 自由競爭으로 인한 教育의 生產性 提高
- ⑩ 建學理念의 尊重과 그 具現
- ⑪ 創意的 發展 및 卓越性의 伸張

위와 같은 利點을 각 대학 狀況과 與件에 맞춰 深度 있게 추구해 간다면 각 대학은 보다 特徵 있고 個性이 있는 大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의 自治는 위와 같이 肯定的側面이 많은 반면, 自律能力의 水準이 아직 미흡하거나 혼히 大學社會에 있을 수 있는 痘疾의 痘弊 등으로 外部的 基準에 의한 劑一的 統制나 일반적 指針보다 더 큰 混雜과 紊亂을 빚을 수

도 있는 危險負擔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私學의 경우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大學의 水準에 따라 自律의 範圍를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自律能力을 갖추지 못한 特定 大學의 過誤나 運營不實 등은 그러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監督權의 行使問題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大學의 自治가 가져올 수도 있는 弊端과 危險性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① 試行錯誤의 混雜과 浪費
- ② 他大學의 事例 등에 대한 無批判的 模倣
- ③ 任意性 濫用에 따른 施策의 一貫性, 持續性 缺如
- ④ 經營指導階層의 偏見이나 獨斷의 副作用
- ⑤ 意思決定이나 執行過程에서의 遲滯와 浪費 등으로 오히려 教育 및 運營面에서의 沈滯나 落後를 초래할 可能性마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自律能力이나 水準 이상의 資質을 재산 강조하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은 大學自治의 否定的側面은 비교적 수준 높은 대학의 경우에도 大學社會의 理論指向의 特性이나 知識人們의妥協를 모르는 我執, 그리고 지나친 思辨性 등 짜증기 쉬운 함정이 많으므로, 日常의 大學運營過程中에서 항상 警戒하고 留念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III. 自治를 바탕으로 한 大學間 協同

大學의 自治는 大學教育을 형성하는 모든 要件들의 전반에 걸친 무제한의 自由와 自己支配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前述하였다. 대학의 基本的 組織運營이나 管理에 있어서 필요한 限界內에서 政府나 監督廳의 規制와 監督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規制와 監督은 大學教育의 合法性이나 公共性을 유지하고 그 秀越性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基準提示이므로 이를 충족한 대학에서는 하등 불편할 것도 구속당하는 것도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大學人口의 급격한 폭증과정에서는 大學設立認可條件의 충족이나 認

可責任의 수행을 위해서도 빈번한 監督廳의 檢查나 實態報告 등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러한 일부 대학에 대한 基本的 要件 충足을 위한 促求나 指示, 命令 등이 때때로 大學教育에 대한 政府의 지나친 干涉 등으로 歪曲 表現되거나 誤認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

大學은 獨自性이나 自律性을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高度의 公共性과 社會的 責任도 강조되는 것이므로 違法不當한 事例가 있을 때 法律上의 制裁나 行·財政上의 間資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大學運營의 自律性은 源泉의 으로 限界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에 대한 法律上의 制約이나 사실상의 規制가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範圍는 大學의 水準과 秩序에 反比例한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에 대한 規制와 他律은 어떤 意義에서 必要惡이며 開發途上國의 모든 大學들이 겪는 發展過程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後進社會의 대학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監督權의 限界에 대한 是非나 自律論爭의 舊穀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많은 問題와 課題를 극복하는 對策과 方案을 摂索하는 데 衆智를 모으고 적은 힘을 서로 합쳐 大學教育의 改革을 성취해 가는 것이 急先務인 것이다.

現代의 大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學術情報의 洪水와 급변하는 社會的 需要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教育內容을 精選하고 教授方法을 개발하여 새로운 要求에 맞는 教育 및 管理體制에로의 革新을 이루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 더우기 근래 學生人口의 急增에 따른 教授要員이나 管理職員의 增員, 內·外部施設의擴充 그리고 學生指導의 어려움 등 참으로 지난날의 大學에서 볼 수 없었던 至難한 課題들이 山積되고 있다.

이러한 각 대학 공통의 課題와 負擔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最善의 方案이 바로 이런 問題들에 대한 共同對處이며 이에 필요한 大學間 協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協同을 통해서 각 대학은 研究와 教育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광범하게 交換할 수 있고 經費와 努力を 절감할 수 있으며 個別 大學의 閉鎖性이나 獨斷을

비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에 대한 批職이나 威脅도 힘을 합하여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大學間 協同은 上述한 大學自治와 함께 個別 大學의 한 權益으로서 教育水準의 向上을 성취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대학의 均衡의 發展을 도모할 수 있는 大學社會의 새로운 發展 model으로 자리잡아 가는 경향이다.

大學間의 協同을 위한 組織과 機構로서는 그協同內容에 따라 研究機關, 評價機關, 協議機關, 財政支援機關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관계있는 각 協議體의 會員으로 加입·협력함으로써 대학간의 連繫體制가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것이 大學社會의 새로운 傾向이다.

위와 같은 大學間에 있어서의 協同內容이나 그 方法은 事業의 性格이나 狀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協同의 必要性이나 協同의範圍는 갈수록 擴大되어 가는 경향이며 相互協同이 가능한 領域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① 新しい 學術·教育情報의 交換
- ② 教材, 教授方法 및 教育資料의 共同開發과 普及
- ③ 專門研究所의 共同活用과 共同研究의 推進
- ④ 教授交流 및 協同講義
- ⑤ 教職員研修의 協力的 遂行
- ⑥ 學點交換認定과 委託受講
- ⑦ 圖書館 등 施設의 共同活用
- ⑧ 學·藝術 및 體育行事 共同運營
- ⑨ 財政運用(教職員報酬, 公納金)에 있어서 各種規準의 協議
- ⑩ 教育用 實習機資材의 共同購買
- ⑪ 經費節減을 위한 實驗用 備品 및 試藥의 共同購入
- ⑫ 學生指導面에서의 相互協調
- ⑬ 教育이나 運營의 相互 評價를 통한 改善과 向上
- ⑭ 大學의 對內外의 權益保護를 위한 共同努力

기타 수시로 共通課題 解決을 위한 協調와 共同對處 등相互利益을 위한 互惠的 協力은 얼마든지 開發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大學間의 協同問題는 각 대학의 自律的 運營 과 自治

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自治의 延長으로서 共通的인 事案에 대한 大學의 自治 效果를 加速化能率化시키는 方案이 될 뿐 아니라, 個別 大學의 試行錯誤의 危險과 負擔을 줄이고 大學運營에 있어서의 普遍性이나 合目的性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大學間 協同의 現實的 必要와 外國의 先例 등은 바로 大學教育協議會 創設의 契機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리한 着想과 그 推進은 우리나라 大學教育史에 새로운 章을 여는 轉機가 되고 大學教育의 先進화를 알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IV. 大學教育協議會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全國 4年制大學 總·學長을 會員으로 하여 1982年 4月 2日 創設되었다. 처음 任意團體로 發足한 協議會는 그 후 社團法人으로 設立認め되고, 조만간 關係法이 制定되어 확고한 運營基盤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定款에 명시된 設置目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大學의 學事, 財政, 施設 등 主要問題에 대한
-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調整을 통해 相互協力하고
- 必要한 事項을 政府에 建議, 政策에 反映케 함으로써
- 大學의 自主性을 提高하고, 公共性을 昂揚하여 大學教育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위와 같은 設置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事業으로서는 大學教育制度에 대한 研究開發을 비롯하여 大學의 學事運營, 財政運用 및 施設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친 共通課題에 대한 研究協議와 調整을 하는 것으로 明文化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協議體에서 하는 事業의 選定이나, 推進方法은 각 대학에서 참여하는 總會나 會員代表로 구성된 理事會에서 審議·調整하게 된다.

이미 大學評價事業을 비롯하여 10여개 事業을 착수하였고 점진적으로 그 機能과 事業을 擴充해 갈 計劃이며 83年度 현재의 事業名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大學評價事業
- ② 政策課題 研究 推進
- ③ 大學教育세미나 運營
- ④ 大學財政 發展研究
- ⑤ 大學關係者 國際交流活動
- ⑥ 大學間 協議體 運營支援
- ⑦ 大學經營管理者 研修教育
- ⑧ 會誌 “大學教育” 發刊 配布
- ⑨ 大學間協議調整業務 推進
- ⑩ 資料室 運營 및 教育資料 蒐集·配布事業
위의 各種事業과 協議會運營을 위한 '83年度豫算規模는 약 4억 5천만원 수준이며 그 半額은 會員大學의 會費로 충당되고 나머지 半額은 國庫에서 補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大學間協議體가 발족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대학의 興望과 아울러 政策當局의 時宜適切한 着想 및 그 推進力에 힘입은 것이지만 上述한 바 있는 여러 가지前提條件의 成熟으로 인한 自律性의 伸張과 大學協同을 促進해야 할 必要性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會員大學의 發展을 위하여 많은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大學의 自治와 協同을 定着시켜가야 하는 協議會의 性格을 명백히 하기 위해 協議會 創設의 背景이나 動機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協議會의 發足은 第5共和國이 지향하는 民主主義의 土着化와 教育革新을 이루하기 위한 意志의 發現이며 社會 모든 領域에 있어서의 開放과 自律을 추구하는 政策의 基調에 바탕을 둔 先導的事例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한때 일부 大學에 있었던 運營上의 非理나 學事秩序의 紊亂으로 社會的 指彈을 받았던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水準이 그동안 政府의 關心이나 각 대학의 努力으로 크게 正常을 되찾아, 오늘의 韓國 大學들은 지난날에 비하여 社會的 信賴를 어느 정도 회復하고 상당한 수준의 自律能力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大學自律의前提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셋째로, 그동안 政府는 보다 수준 높은 政策의 次元의 事務에 그 機能을 集注하기 위해 所管事務의 自律化나 下部機關 委任을 추진하여 왔

다. 이와 관련하여 大學管理業務를 主管해 온 文教部로서도 날로 廣範해지고 專門化되어 가는 大學教育에 관한 指導監督이나 行·財政業務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그 機能이나 人力面에서 限界性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비례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教育行政의 民主化나 大學自律에 대한 大學人們의 꾸준한 希求와 時代的 要請 그리고 世界的인 思潮가 時宜에 맞게 受容된 것이라고 들이 할 수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각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共同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절박한 現實的狀況이 바로 大學間 協力を 促進하는 背景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背景과 動機에서 발족한 大學教育協議會는 創設 후 1년 반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면서 스스로 그 機能과 役割을 定立해 가고 있으며, 굳이 그 機關의 性格을 규정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大學教育의 制度와 運營에 관한 專門的 研究機關이다.

② 各 大學이 共通의으로 안고 있는 問題點이나 課題을 收斂하여 이를 研究 協議하고 필요한 경우 政府에 建議하여 政策에 反映해 하는 大學의 代辯機關이다.

③ 政府의 基本政策이나 새로운 大學教育思潮를 教育現場에擴散普及하는 啓導機關이다.

④ 大學education의 世界的 動向인 教育改革을 추진하여 教育의 質的 向上을 추구해 가는 自律的 評價機關이다.

⑤ 會員大學의 權益을 保護하고 필요한 教育情報나 資料를 會員大學에持續的·體系적으로 提供하는 奉仕機關이다.

⑥ 定款에 列舉된 事業과, 아울러 會員大學들이 필요로 하는 事業에 대한 研究開發이나 그 實行方案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추진해서 實行하는 執行機關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韓國의 大學教育史 一世紀 동안 출한 變化와 迂除曲折이 많았다. 民族的 醒悟으로 現代의 大學教育이 시작된 이래 日帝下에서의 框梏과 受難, 解放後의 混沌과 無秩序, 韓國動亂으로 인한 破壞와 復舊, 그 후의 擴充과 整備, 1960年代의 量的 膨脹과 1970年代 이후의 質에 대한 疼心, 이제 2000年代를 겨냥해야 하는 1980年代의 韓國各 大學들이 안고 있는 課題들은 너무나 벅차고 힘겨운 짐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負擔이나 課題는 先導的인 몇몇 大學의 能力이나 努力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大學이 각자 自治를 바탕으로 한 創意的 發展을 追求해 가는 한편으로, 汎通의 課題나 大學間에 관연이 깊은 問題는 相互協力으로 해결해 가는 大學間의 協同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닥쳐 올 大學education의 試練과 大學에 대한挑戰을 克服해 갈 수 있는 捷經이며 秘訣이 될 것이다.

지금은 大學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지난날의 混線과 試行錯誤를 거울삼아 날로 치열해 가는 國際的 教育競爭에서도 뒤지지 않는 새로운 大學像을 確立하는 일을 시를어야 할 時點에 있다.

이러한 轉換期에 韓國大學education協議會가 하루 바삐 成長發展해서 大學人们的 agora(agora)廣場이 되고 우리나라 大學education의 보다 큰 發展과 새로운 跳躍을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共同課題인 것이다. *